

코로나19 확산 관련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

2020.2.26.(화) 10:30, 외교부(재외국민안전과)

※ 국가·지역별 가나다 순

□ 입국금지 조치

※ 명시적 입국 금지 외에도 한국 출발 이후 일정기간 이후 입국토록 하는 조치도 이에 포함

구 분	조 치 사 항	
아시아·태평양	나우루	▶ 입국 전 21일 이내 한국, 중국, 일본 등 코로나19 발병 국가에서 출발 또는 경유하여 입국하는 여행객 입국금지(2.24)
	마이크로네시아	▶ 한국, 중국, 홍콩, 마카오, 일본, 싱가포르, 태국에서 입국한 여행자들은 입국 전 14일 또는 하와이에서 14일간 격리 조치(2.24)
	베트남	▶ 대구·경북 거주 한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및 최근 14일간 동 지역을 경유한 입국자 입국금지(2.25) / 국적불문 한국발 입국자 또는 한국 경유자의 경우, 검역 설문지 작성 및 제출
	사모아	▶ 한국, 중국, 홍콩, 마카오, 일본, 싱가포르, 태국을 방문·경유한 외국인의 경우 △입국 전 코로나19 미발생국에서 14일 이상 자가격리, △입국일 기준 3일 이내 건강검진서 제출, △14일 이내 입국시 추방(2.19.)
	솔로몬제도	▶ 감염국으로부터 파푸아뉴기니, 피지, 키리바시, 바누아투 또는 나우루 등을 경유하여 오는 여행객 입국 금지(2.3) ※ 감염국·지역(24) : 중국, 호주, 캄보디아, 캐나다, 핀란드, 프랑스, 독일, 인도, 이탈리아, 일본, 말레이시아, 네팔, 필리핀, 러시아, 스리랑카, 싱가포르, 스웨덴, 태국, 한국, UAE, 영국, 미국, 베트남, 대만
	싱가포르	▶ 최근 14일 이내 대구·청도 방문한 개인의 경우 싱가포르 입국·경유 금지/ 싱가포르 국민, 영주권자, 장기체류비자 소지자에 한해 입국 후 14일간 자택격리(동 기간 중 체류지 이탈 불허)를 조건으로 입국 허용(2.26(수) 23:59)(현지 시간 기준)
	키리바시	▶ 한국, 중국, 싱가포르, 일본, 말레이시아, 베트남, 태국, 미국을 방문한 경우 △코로나19 미발생국에서 14일간 체류 및 미감염 의료 확인서 제출, △14일 이내 입국 시 격리조치 적용 및 추방 고려 가능(2.11.)
	투발루	▶ 한국, 중국, 홍콩, 일본, 싱가포르, 태국, 대만(이상 고위험국가)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입국 3일전 의료소견서를 받아야하며, 입국 최소 5일전 고위험 국가가 아닌 국가에서 체류 후 입국 가능 / 최근 30일간 중국 등 고위험 국가에 있었던 외국 국적 선박 승무원 입국 금지(2.24)
중동	홍콩	▶ 한국에서 출발하거나 최근 14일 이내에 한국을 방문한 사실이 있는 홍콩 비거주자(한국인 및 외국인 불문)는 입국불가/홍콩거주자는 입국가능하나 대구·경북지역 방문 여부에 따라 격리 조치(2.25) ※ 후베이성 주민과 최근 14일 내 후베이 지역을 방문한 사람 입국 금지(1.27) ※ 중국 본토에서 홍콩으로 입경하는 모든 사람 입국 금지(2.8)
	바레인	▶ 최근 14일 이내 한국, 태국, 말레이시아, 싱가포르, 이란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 금지(2.21.) ※ 최근 14일 이내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경우 입국 금지(2.13) ※ 해당 외국인 중 바레인 거주허가증 보유자는 입국 가능하나, 의료검사 및 격리 등 강화된 검역조치 적용
	요르단	▶ 최근 14일 이내 한국, 중국, 이란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금지(2.23.)

	이라크	▶ 한국, 태국, 일본, 이탈리아, 싱가포르를 출발하여 직·간접적으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 금지(2.25) ※ 외교관 및 공식방문단은 입국 금지 제외
	이스라엘	▶ 최근 14일 이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금지(2.24.) ※ 중국(2.2), 홍콩·마카오·태국·싱가포르(2.18.), 한국·일본(2.24.)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금지
	쿠웨이트	▶ 최근 14일 이내 한국, 태국, 이탈리아, 이란에서 입국한 외국인의 경우 입국(환승 포함) 금지(2.25)
미주	사모아 (미국령)	▶ 확진자 발생국에서 하와이를 경유하여 사모아(미국령)에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△하와이에서 14일간 체류 필요, △입국 3일전 건강검진서 제출(2.7.)
아프리카	모리셔스	▶ 한국, 이탈리아(북부 3개주)로부터 출발하거나 최근 14일 내 동 지역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 일시적 입국금지(2.24) ※ 중국발 방문자 입국 금지(2.2)

□ 입국절차 강화 : 검역 강화, 격리 조치 등

구 분		조 치 사 항
아시아 태평양	대만	▶ 한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14일간 자가 격리(2.25)
	마카오	▶ 최근 14일 내 한국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입국자를 대상으로 별도 지정 장소에서 6~8시간 소요되는 검역 실시(2.23.)
	태국	▶ 경북, 대구 지역에서 입국한 여행객 입국 시 발열, 콧물 등 증상이 발견될 경우 의무 샘플 검사 실시(2.23) ※ 보건부는 한국, 중국, 싱가포르, 일본 등에서 입국한 여행객들에게 최소 14일간 자체 모니터링 권고
유럽	영국	▶ 한국(대구·청도), 중국(후베이성), 이탈리아 북부 지역, 이란으로부터 입국한 여행객에 대해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대인접촉 피하고 보건의료서비스(NHS)에 통보토록 요청(2.25)
	카자흐스탄	▶ 한국, 싱가포르, 일본, 태국, 홍콩, 마카오, 대만으로부터 입국자에 대해 24일간 의학적 관찰(△14일간 의료진 매일 문진, 이후 10일간 전화 등 원격으로 모니터링) 시행(2.20.)
	키르기스스탄	▶ 한국에서 입국한 모든 탑승객(한국인 및 키르기스인 등)에 대해 14일간 격리 조치(2.24)
	타지키스탄	▶ 한국, 중국, 싱가포르, 일본, 이란, 이탈리아 등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모든 사람 격리조치(2.25)
	투르크메니스탄	▶ 확진자 발생국 국적자(외교관 포함) 대상 입국 심사 시 병원이송 등 의료검사 실시 및 유증상자는 2~7일 간 감염병원 내 격리 시행(2.23)
중동	오만	▶ 한국, 중국, 이란, 싱가포르, 일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14일간 자가 또는 기관 격리 시행 발표(2.22.) △영주비자가 있는 경우 “14일 자가 격리”에 대한 소속기관의 보증하에 입국 가능 △외교관의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14일간 자가 격리 시행
	카타르	▶ 한국, 중국, 이란을 방문한 입국자들의 경우 일괄 시설격리 조치(2.25)
아프리카	우간다	▶ 한국, 중국, 일본, 싱가포르 등 확진자 발생국을 방문·경유하고 의심 증상이 있는 외국인의 경우 14일간 자가 격리 요구(2.18)

/끝/